

Legislative & Policy Weekly

세종Law Focus

주간 입법·정책 동향

Vol.225 | 2024.03.04 (2024.02.26~03.03)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2. 입법(행정)예고 법안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4. 본회의 통과 주요 법안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별첨] 지난 호 세종Law Focus(제224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02.26~03.03)

Summary

【정부의 주요 정책】

2/26(월) 제15차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가 “충남, 기업과 산업이 살아 숨쉬는 모빌리티 선도 지역으로 도약”을 주제로 개최된 바, ▷당진을 기업혁신파크 선정, ▷SK렌터카 등 모빌리티산업 육성 위한 기반 마련, ▷논산 국방산단과 천안·홍성 모빌리티 국가산단 통해 24.1조원 투자효과 도모, ▷태안·아산 스마트시티 통해 수요응답형 교통, 로봇·드론배송시스템 도입 등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2/26(월) 정부는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교통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로 속도·주거환경·공간 등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의 이행 현황 점검 및 후속조치 계획, ▷민생·상생금융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계획, ▷국민과 기업의 상생·성장을 위한 자본시장 선진화 추진방향, ▷범정부 협업을 통한 혁신적 조달기업 성장 지원방안, ▷글로벌탑 기후환경 녹색산업 육성방안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국방부>는 군사시설보호구역 최소화를 통한 국민권익 증진을 위해 여의도 면적의 117배에 달하는 보호구역 339㎢를 해제를 발표한 바, 이는 2007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이 제정된 이래 최대규모의 보호구역 해제로, ▲군 비행장 주변 287㎢,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접경지역 38㎢, ▲민원이 있는 지역 14㎢ 등이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리고 보호구역을 해제하기 어려운 103㎢(파주 등 4개 지역)에 대해서는 일정 높이 이하 건축물의 신축 등에 대한 군 협의를 생략하여 보호구역이 해제된 것과 같은 효과를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입법(행정)예고】

<기획재정부>는 첨단산업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통합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시설을 추가하고, 기회발전특구 창업기업 세액감면 신설에 따라 세액감면 적용을 위한 사업용 자산의 범위를 구체화하며, 유턴기업 세액감면 적용 시 업종 유사성 확인을 받은 경우 제출서류를 추가하는 등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를 적용하여 이월된 감가상각비 중 남은 금액이 있는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 해당 금액 모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소형 신축주택 및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세부요건 및 확인절차 등을 구체화하고, 자녀세액공제 대상에 손자녀를 추가하는 등의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토지 양도 수익의 익금산입에 관한 특례의 대상이 되는 토지개발사업의 범위를 정하고, 최근 금리 수준을 반영하여 부동산임대에 의한 사업수입금액의 추계 시 적용되는 이자율을 변경하고, 금형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변경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는 버티포트의 시설 구분, 도심항공교통기본계획 및 현황조사, 실증사업구역 및 시범운용구역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령안」,

<중소벤처기업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지원 대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지원을 신청한 소상공인으로 규정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이 입법예고되었습니다.

【법률 발의 및 제출안】

OS(운영체계)를 공급하는 앱 마켓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앱 마켓사업자를 통해 스마트폰, 태블릿 PC에 앱의 설치·이용을 막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앱 마켓 생태계 전반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의원 등 10인)**」,

사업자 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을 보장하여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의 후생을 증진하기 위해 단말기 유통법을 폐지하고, 단말기유통법상 존속 필요성이 있는 규정을 현행법에 신설함으로써 이동통신서비스 관련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의원 등 10인)**」,

인천광역시를 국제물류특구를 지정해 관세 등의 면제와 각종 자금을 지원하고, 인천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해 외국투자기관에 대한 특례와 입주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통해 첨단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또 문화산업진흥지구를 지정해 문화산업 관련 기업 및 대학, 연구소 유치 및 연구개발·인력양성·공동제작 등 문화산업을 집적화하고, 국제기구, 외국인투자기업, 국제학교, 국제여객터미널 등 글로벌경제거점도시 육성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인천 글로벌경제거점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김교홍의원 등 10인)**」,

국가첨단전략기술로 고시되어 있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분야와 함께 수소, 모빌리티 분야를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국가첨단전략기술로 법에 명시함으로써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쟁력 강화 및 보호를 가능하게 하고, 해당 기술 및 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의원 등 10인)**」 등이 발의되었습니다.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지난 2/29(목) 개의된 제413회국회(임시회) 마지막 본회의에서는 총 67건의 안건을 처리한 바, 특검법안(2건), 임명동의안(대법관 신숙희·엄상필) 임명동의안,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위원(김지현·최경수·허환준) 추천안, 2023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국토위·여가위) 채택, 법률안 59건 등입니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및 화천대유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은 두 건 모두 부결되어 최종 폐기되었습니다.

그리고 제22대총선을 위한 선거구 획정은 국회의원 수 300명 유지하되, 지역구 254명으로 1명 증가(비례 1석 축소)로 확정되었습니다.

※ 인천·경기 각 +1, 서울 -1, 전북은 10개 지역구 유지

※ 서울 48, 부산 18, 대구 12, 인천 14, 광주 8, 대전 7, 울산 6, 세종 2, 경기 60, 강원 8, 충북 8, 충남 11, 전북 10, 전남 10, 경북 13, 경남 16, 제주 3

목 차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바로가기](#)

- 제15차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충남, 기업과 산업이 살아 숨쉬는 모빌리티
선도 지역으로 도약(정부부처 합동) 7
- 비상경제장관회의: 교통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로 속도·주거환경·공간 등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의 이행 현황 점검 및 후속조치 계획 논의 (정부부처 합동) 9
- 비상경제장관회의: 민생·상생금융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계획(정부부처 합동) 11
- 비상경제장관회의: 국민과 기업의 상생·성장을 위한 자본시장 선진화 추진방향(정부부처 합동) 12
- 비상경제장관회의: 범정부 협업을 통한 혁신적 조달기업 성장 지원방안(정부부처 합동) 14
- 비상경제장관회의: 글로벌 탈 기후환경 녹색산업 육성방안(정부부처 합동) 16
- 민군(民軍) 상생을 위해 역대 최대규모의 군사시설보호구역 339km² 해제(국방부) 19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바로가기](#)

-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기획재정부) 23
-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기획재정부) 24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기획재정부) 25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기획재정부) 26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기획재정부) 27
- 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기획재정부) 27
-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제정법률(과학기술정보통신부) 28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산업통상자원부) 29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중소벤처기업부) 29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중소벤처기업부) 29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중소벤처기업부) 30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공정거래위원회) 30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금융위원회) 31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금융위원회) 31

2. 입법(행정)예고 법안

[바로가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기획재정부) 32
-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기획재정부) 33
-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기획재정부) 34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기획재정부) 35
-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국토교통부) 36

-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국토교통부) 37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국토교통부) 38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중소벤처기업부) 38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금융위원회) 39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外(금융위원회) 39

3. 법률 발의(제출)안 [바로가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노동위원회 등 10인) 41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의원 등 10인) 41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의원 등 10인) 42
- 인천 글로벌경제거점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김교홍의원 등 10인) 42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의원 등 10인) 44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의원 등 10인) 44

4. 본회의(2/29) 통과 주요 법안 [바로가기](#)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 45
-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5
-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5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5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 46
-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6
-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46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6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6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7
- 환경분쟁 조정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47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7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7
-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8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 48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 48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 48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8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9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9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바로가기](#)

※ 예정된 회의 일정 없음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바로가기](#)

[별첨] 지난 호 세종Law Focus(제224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02.26~03.03) [바로가기](#)

- **[공정거래]** 2024년 공정위 주요업무 추진계획 관련 시사점
- **[해외규제]** 미국 국무부·재무부·상무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2주기 및 알렉세이 나발니 사망에 대응한 대규모 신규 경제제재 및 수출통제 조치 발표
- **[조세]** 2024년 지방세관계법령 개정
- **[기업인수/합병]** 우려스러운 IRA, FEOC 규정 및 미국 대선 RISK에 대응해야 하는 한국 자동차와 배터리 합작회사들
- **[공정거래]** 지배력 상실을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계열 제외 판단을 받은 사례
- **[건설/부동산]** 안전관리계획의 일부 누락을 이유로 부과된 건설기술진흥법상 벌점부과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부실공사 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제1심에서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 **[ESG]**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준비 - 2.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1차 발표
- **[노동]** 직장 내 성희롱 사건 조사 시 유의 사항 : 성인지 감수성 원칙,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계부처 합동 (국토교통부)	제15차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충남, 기업과 산업이 살아 숨쉬는 모빌리티 선도 지역으로 도약 - 당진 기업혁신파크 선정, SK렌터카 등 모빌리티산업 육성 위한 기반 마련 - 논산 국방산단과 천안·홍성 모빌리티 국가산단 통해 24.1조원 투자효과 - 태안·아산 스마트시티 통해 수요응답형 교통, 로봇·드론배송시스템 도입	2024-02-26
----------------------------	--	-------------------

열다섯 번째 민생토론회에서는 당진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선정 결과와 함께 천안·홍성 신규 국가산단 2곳과 논산 국방국가산단, 스마트시티 등을 통한 국방·모빌리티 산업 거점 육성 지원방안이 발표됨

*기업이 직접 입지를 선정, 계획·자본조달·개발·사용하는 등 기업주도 복합도시를 조성하는 사업

거제에 이어 두 번째로 선정된 ‘당진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은 국내 렌터카 시장의 선두그룹인 (주)SK렌터카가 단독으로 제안하였으며, 자동차산업 밸류체인 기업들을 집적시킬 수 있는 모빌리티 혁신파크를 조성함

이날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의 사업성을 개선하고, 개발에 참여하는 기업과 입주할 기업의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범정부 지원 계획도 함께 발표됨

주요 내용으로는

(1) 개발제한구역(GB) 규제 혁신

- ① 과거 기업도시 사례에 준하여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조성 시 필요한 진입도로를 국비 보조하고,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산업단지와 동일한 수준으로 국비 보조

* 기반시설별 국비보조율(잠정): 진입도로 50%, 공공폐수처리시설 70%

- ②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민간과 지자체가 함께 SPC를 구성하여 추진하는 경우에는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활용

* 정부재정·산업은행·지방소멸대응기금 출자를 통해 모펀드 3천억 원 조성

- ③ 기업혁신파크 입주기업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기업혁신파크를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하려는 경우 기업혁신파크 지구 지정 신청과 동시에 기회발전특구 지구 지정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여, 기회발전특구를 연계한 개발계획 수립 가능

* 기업혁신파크 지구 지정 신청: 기업·기초지자체 → 국토교통부
기회발전특구 지구 지정 신청: 광역지자체 → 산업통상자원부

< 기업혁신파크 및 기회발전특구 세제지원 비교 >

구분		기업혁신파크(기업도시) (조특법)	기회발전특구 (조특법, 지특법)	비고
(국세) 법인세/소득세		3년 100%, 2년 50% 감면	5년 100%, 2년 50% 감면	신설·창업
(지방세)	취득세	최대 50% 감면	100% 감면	창업
	재산세	최대 50% 감면	5년 100%, 5년 50% 감면	창업

④ 기업주도 개발방식인 기업혁신파크 본격 추진에 더해, 국가 주도 산업입지 공급방식인 ‘국가산업단지’ 조성도 차질 없이 추진

- '24월 1월 공식 지정된 논산 국방 국가산업단지는 우리나라 최초의 국방 특화 국가산단으로서, 무기를 제외한 장비, 물자를 생산하는 전력지원 중심의 국방산업 클러스터로 조성*할 계획
- *인근의 육해공군본부, 육군훈련소, 국방대학교, 육군항공학교 등 기관과 연계
- 즉시 부지조성 설계에 착수하고, 설계 결과를 토대로 하반기에 토지보상 절차에 착수하여 임기 내 부지 공급을 통해 국방 기업들의 적기 투자 적극 지원

⑤ '23년 3월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통해 발표한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 15개소 중 미래 모빌리티에 특화된 천안, 홍성 국가산단도 조속히 추진

- 연내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를 완료하고, '26년 내 산업단지계획 승인 및 산업단지 지정·고시를 통해 임기 내 착공 기반 마련

⑥ 기업과 청년근로자 등 수요자 중심의 산단 조성을 위한 방안 추진

- 신속한 투자의사결정이 필요한 기업을 위해,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이후에는 부지조성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토지를 미리 확보하여, 토지가 공급되는 즉시 공장 건설 등 투자를 시행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검토·마련
- 산업단지 계획 단계부터 기업을 위한 R&D시설, 법률·회계·금융서비스업을 생산시설 인근에 집적하고, 청년들을 위한 문화·체육·편의시설도 충분히 배치

⑦ 국토교통부는 산업입지 공급 외에도 중소도시가 기후위기·지역소멸 등 환경변화에 대응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ICT 기반의 스마트 솔루션을 지원하는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도 적극 추진

- 충청남도에서는 태안군과 아산시가 작년 5월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에 선정되어 본격적으로 사업을 착수하기 위해 준비 중
- 태안군은 수요응답형 버스, 드론배송 등 미래형 첨단 모빌리티와 관광자원을 경험할 수 있는 스마트솔루션 적용을 통해 지역소멸 문제 대응
- 아산시는 도시 내 유휴시설 및 캠핑장 등을 활용하여 공간을 구성하고, 전자시민증, 스마트오피스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충남 태안군 · 아산시 강소형 스마트시티 구상도 >



- 국토교통부는 태안군과 아산시 스마트시티 조성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기 국비 지원('23~'25, 지역별 120억 원) 등 각 지자체 및 참여기관들과 적극 협력

기업혁신파크 추진을 위한 「기업도시법」 개정 주요 내용으로는

- ① (개발면적 기준 완화) 최소 개발면적 축소(100만㎡→50만㎡ 이상)
 - 기존 기업도시·산단 등 인접하여 개발하거나 또는 수도권 기업이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25만㎡까지 완화
- ② (절차간소화) 통합계획(개발계획+실시계획)을 도입하고, 교통·재해·교육 등 개별 절차에 대한 통합심의 신설
- ③ (도시·건축특례 강화) 기업도시 개발구역을 국토계획법상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 가능
 - * (인센티브) 건폐율·용적률 등 완화 또는 배제, 특별건축구역 지정의제 등
- ④ (입주기업 지원 확대) 개발이익을 통한 입주기업 지원시설 설치대상 확대* 및 규제자유특구 등 실증사업 지정 지원 근거 명문화
 - * (현행) 기반시설 및 문화·체육시설 설치, 입주기업 토지분양가 인하 → (확대) 창업보육시설 설치
- ⑤ (설립 외국교육기관 확대) 기업도시 개발구역 내 설립 가능한 외국교육기관을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까지 허용(현행:대학교)

정부부처 합동
(국토교통부)

비상경제장관회의

- 교통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로 속도·주거환경·공간 등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의 이행 현황 점검 및 후속조치 계획 논의

2024-02-26

수도권 광역급행철도망(GTX)과 지역 광역철도망(x-TX) 구축을 조속히 추진하고, 신도시 광역 교통개선을 위한 맞춤형 대책도 상반기 중 마련하기로 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전국 GTX) 초연결 광역경제생활권 및 다핵분산형 메가시티 조성

- (1기 GTX) A노선 수서~동탄 구간 개통('24.3)을 시작으로 '28년 완전 개통, 철저한 사업 관리를 통해 B노선 '30년, C노선 '28년 개통 추진
- (2기 GTX) 연장 노선은 지자체 비용 부담 방식 등을 통해 임기내 착공 추진, 신설 노선도 5차 철도망 계획 반영 및 '35년 개통 추진
- (지방 GTX) 대전~세종~충북(가칭CTX)을 선도사업으로 추진하고, 그 외 사업에 대해서도 급행철도로 추진 가능한 노선 적극 발굴

② (신도시 교통 개선) 편리하고 쾌적한 출퇴근 길 조성으로 삶의 질 제고

- (권역별 대책) 수도권 서부김포골드라인 혼잡 완화 대책('24.1)을 시작으로 수도권 북부·동부·남부권 등 권역별로 릴레이 교통대책 마련
- (이동 편의 제고) 출퇴근 시간대 2층 전기버스 및 전세버스 집중 투입, 광역버스 좌석 예약제 확대, 버스전용차로 운영 등 추진
- (집중 투자) 광역교통 개선대책 사업비(약 11조원)를 활용한 집중투자 및 사업 절차 개선으로 광역교통시설 완공 시기 단축

③ (철도·도로 지하화) 철도와 도로의 지하화로 도시 공간 재구조화

- (철도 지하화) 지상 철도를 지하에 새로 건설하고, 철도 부지 및 인접 지역 등 상부 공간을 개발하여 도시 공간 구조를 재설계
- (지하 고속도로) 고속도로의 만성적인 정체 문제 해소를 위해 지하 고속도로를 본격화하여 도로 용량을 입체적으로 확장

향후 추진계획(상반기까지 단기계획)으로는

① 수도권 GTX 본격화

- (1기) A노선(수서 동탄)은 사전점검* 후 차질 없이 개통(3월末)하고, 이를 위해 A노선-버스·지하철 등 연계교통체계 마련·홍보(3월)
 - * 정부합동 無 시나리오 실전훈련(3.15) / 지자체·교통약자·일반국민 점검(3월 2~3주)
- B노선은 재정구간 용산~상봉 착공(실시계획 승인 후 3월初)을 시작으로 상반기에 쏙 구간 착공(민자사업 협약안 민투심 심의, 2.27)
- C노선은 적기 개통을 위해 공정관리(공정관리협의회 구성, 3월) 철저
- (2기) A·C노선 연장을 위한 타당성 검증 등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B노선 연장(지자체 부담 방식)을 위해 가평·춘천시 협의(계속)
 - * A·C 연장 타당성 검증용역(~'24.7) → 위수탁협약 체결('24.12) → 설계('25) → 착공('26)
- D~F 신설은 지자체·업계 설명회*를 마무리(5월)한 후, '5차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을 위한 검토 착수('24.6)
 - * 1차인천, 2차경기 남부·충청, 3차경기 동북부, 4차경기 동남부·강원, 5차서울, 6차업계

② 지방 광역철도망

- (x-TX) 선도사업 예타·민자적격성 조사, 추가 사업 지속 발굴
- (광역철도) 울산권 태화강~송정 착공('24.6), 구미 경산 철도는 지방권 최초 광역철도로서 올해말 개통을 위해 격주 단위 공정관리*
 - * 공정관리 TF 운영(철도투자개발과장長 및 철도공단, 철도공사 등 관계기관 참여)

③ 신도시 광역교통 개선

- (권역별 대책) 서부권(김포) 및 3개 권역별 맞춤형 대책 적극 추진
- (서부권) 김포 서울 광역버스 4개 노선을 개통(3~6월)하고, 올림픽대로*에 버스전용차로 도입(6월) 및 김포골드라인 증편**(6월)
 - * 환승거점인 당산역에 올림픽대로 버스전용차로와 연계한 환승센터 확충(6월 준공)
 - **6편성 순차 투입(시격 3.1분 → 2.5분, '24.6~'25.3) + 5편성 추가(시격 2.5분 → 2.1분, '26末)
- (서부권 외) 수도권 동·남·북부 교통 불편지역 맞춤형 대책 마련(6월)
- (제도개선 등)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광역교통법」 개정*(발의 협의 중)
 - * 재원 효율적 관리(LH 계정 신설), 대광위 갈등조정 기능 확대, 도로 직접 인·허가 등
- (편의 제고) 광역버스 좌석예약제를 확대(現46개 + 20여개 노선, 4월)하고, 2층 전기 버스 연말까지 순차 투입(월별 4~5대, 올해 50대)
- (인프라 구축) 수도권 권역별 집중투자사업* 이행을 위한 TF를 구성(2월)하여 사업별 세부일정 및 투자계획 등 확정(6월)
 - *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개발지구 핵심 교통인프라 32개 사업(약 7.4조원)

④ 철도·도로 지하화

- (철도 지하화) 3월부터 지하화 종합계획 수립 본격 착수
- (지하 고속도로) 예타 통과를 최우선으로 지자체 등과 협업체계를 구축(3월~), 지하도로 안전 강화를 위해 전문가 의견 수렴(세미나, 2월)

정부부처 합동
(금융위원회)

비상경제장관회의

- 민생·상생금융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계획

2024-02-26

3월 29일부터 비은행권 이자 환급(40만명 대상, 약 0.3조원 지급 예정)을 진행하고, 은행권의 임대료 등 지원도 4월부터 차질없이 집행하기로 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민생금융으로 고금리 부담 경감(금융위·중기부 협업)

-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고금리 부담을 신속히 경감*하고,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확장**을 통해 금리경쟁과 저금리 갈아타기 촉진
 - * [이자환급] (은행권) 약 188만명, 총 1.5조원 (중소금융권) 약 40만명, 총 0.3조원
 - [저금리 대환] 7% 이상 고금리대출을 최대 5.0%의 저금리대출로 전환
 - ** (기존) 신용대출(237조원) → (개선)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추가(+1,008조원)
 - ※ 은행권 자체적으로 총 2.1조원 규모의 민생금융지원방안 마련('23.12.21일) → 소상공인 이자환급 1.5조원, 취약계층 지원(서민금융진흥원 출연,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등) 0.6조원
-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구축으로 서민금융지원 절차 획기적 개선*
 - * (現) 센터 내방하여 이용시 최대 5일 → (改) 플랫폼을 통해 비대면으로 평균 30분 이내

② 상생금융으로 취약계층 재기 지원(금융위·과기부·고용부 협업)

- 서민·소상공인에 대한 연체이력정보 공유·활용 제한*, 금융·통신채무 통합조정** 등으로 신속한 신용회복 지원
 - * 최대 298만명이 연체금액 전액상환시 지원대상에 해당
 - ** 최대 37만명 대상
- 연체 채무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24.10월)
- 금융·고용 제도간 연계를 확대*하여 취약층의 경제적 자활지원
 - * 서민금융제도(금융위)와 고용제도(고용부)간 연계 확대(대상자 : 3천명 → 26만명) 등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① 민생금융

- (소상공인 이자환급 및 대환) 既발표한 「소상공인 금리부담 경감방안」('24.1.31일)에 따라 차질 없이 지원
-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전산개발, 테스트 등 종합플랫폼 구축을 추진하여 '24년 6월 중 운영 개시

② 상생금융

- (신용회복 지원) 신용회복 지원대상 여부 확인시스템 및 연체이력정보 공유·활용 제한조치 시행(3.12일 잠정)
- (금융·통신채무 통합조정) 통신업계·신복위 간 업무협약(MOU)체결(3월), 세부 지원방안* 협의를 거쳐 금융·통신채무 통합조정 시행(6월)
- (개인채무자보호법)입법예고, 규제위·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하위규정을 제정하고, 금융회사 내규반영 등*을 거쳐 법을 차질없이 집행
 - * 채무자보호법령을 금융회사 내규에 반영, 금융회사 전산개발, 직원 교육 등
- (금융·고용 복합지원) 금융·고용 복합지원 창구 마련('24.3월), 고용지원제도 연계대상 확대(6월), 양방향 연계시스템 구축(하반기) 등 순차적으로 추진

정부부처 합동
(기재부, 금융위)

비상경제장관회의

- 국민과 기업의 상생·성장을 위한 자본시장 선진화 추진방향

2024-02-26

우리 증시의 저평가를 해소하고 자본시장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기 위해 ▶주주가치 제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수요기반 확충을 추진하겠다고 함. 특히, 기업이 자발적인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통해 주주와 함께 성장하는 '기업 가치 제고(밸류업)'을 위해 지침(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모범납세자 선정 우대, 밸류업 지수 편입 우대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함. 또한 기업가치 제고와 주주 환원 확대에 대한 다양한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연기금 등의 의결권 행사지침(스튜어드십 코드)에도 반영하기로 함

< 자본시장 선진화 주요과제 >

대상	추진방향	세부과제
인프라	① 공정·투명한 시장질서 확립	❶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 ❷ 불법 공매도 근절 ❸ 유사투자자문업 규율 강화
투자자 (국민)	②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	❶ 외국인 ID 폐지, 영문공시 의무화 등 ❷ 외환시장 접근성 제고 ❸ 금투세 폐지, ISA 세제혜택 확대 등 투자 매력도 제고를 위한 세제개선 지속 추진 ❹ ATS 등 다양한 거래 시스템 구축 ❺ IR 강화 / ❻ 금융교육 지속·확대
기업	③ 주주가치 기업경영 확립	❶ 일반주주 보호 강화* * 물적분할, 내부자거래 사전공시, 의무공개매수, 전환사채, 자사주, M&A 등 관련 제도개선 ❷ 배당절차 개선 ❸ 소액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 ❹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추진

기업혁신·규제개혁 등을 통한 기업의 성장과 경쟁력 제고

“상생과 기회의 자본시장”

주요 추진과제로는

① **공정·투명한 시장질서 확립**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사전감시·사후제재 강화
- 불법 공매도 근절을 위한 근본적 제도개선
- 「진입·영업·퇴출」 3단계에 걸쳐 유사투자자문업 규율 강화

②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

- 외국인ID폐지, 영문공시 의무화 등 외국인 투자자 접근성 제고
- 외국금융기관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 허용 및 개장시간 연장
- 세제개선 과제를 지속 발굴하여, 시중 유동성이 ‘국내’ ‘자본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는 제도적 여건 조성
- 대체거래소 출범, 비상장주식시장 제도화 등 거래 시스템 다양화
- 상장사·거래소 등 유관기관 및 정부 주관 국내외 IR 강화
- 금융교육 강화를 통해, 신중하고 성숙한 투자문화 조성

③ **주주가치 기업경영 확립**

- 일반주주 이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전방위적 제도개선

< 일반주주 이익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현황 >

과제명	주요 내용	시행시기
물적분할 제도개선	물적분할시 ▶공시 강화,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자회사 상장심사 강화 등 일반주주 보호 강화	'22.12월
내부자거래 사전공시	내부자(임원·주요주주)의 대규모 거래시 매매계획 사전 공시 등을 의무화하고, 위반시 과징금 부과	'24.7월
의무공개매수 제도화	인수자에게 피인수기업 잔여주주 지분을 지배주주와 동일한 가격으로 공개매수하도록 의무화	정무위 계류중 ('23.5월~)
전환사채 제도개선	공시 강화, 전환가액 산정·조정(리픽싱) 방식 합리화 등을 통해, 대주주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 유인 차단	제도개선 방안 발표('24.1~2월) ↓ 시행령·감독규정 등 개정 추진 (~'24.下)
자사주 제도개선	인적분할시 자사주에 신주배정(자사주마법)을 금지하고, 공시·상장심사도 강화	
M&A 제도개선	합병에 대한 공시 강화, 외부평가기관 행위규율 마련, 합병가액 산정의 자율성 제고 등 M&A 규제 합리화	

- 배당금을 미리 알고 투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 기업가치 제고와 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
- 상장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기업 밸류업(value-up) 지원안 마련 추진

정부부처 합동
(조달청)

비상경제장관회의

- 범정부 협업을 통한 혁신적 조달기업 성장 지원방안

2024-02-26

혁신적 조달기업에 대해 전 부처가 협업하여 종합적인 일괄(패키지)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혁신제품의 신청·지정 관련 정보를 '혁신장터'를 통해 통합 제공(13개 부처 사업)하는 한편, 해외 조달시장 진입을 위한 인증·마케팅 비용 등을 지원하는 '조달바우처'(기업당 최대 3천만원)를 올해부터 새로 지원하고, 해외 수요가 수출로 이어지도록 전 단계를 일괄(패키지) 지원하기로 함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① 혁신적 조달기업의 성장 및 도약

- (공공판로) 혁신제품 단가계약 확대, 유연한 계약방식 도입*, 혁신제품 신청 및 지정 플랫폼 일원화** 등 조달체계 효율화

* (기존)단가계약 시범도입, 구매한정 수의계약→(개선)단가계약 본격 확대, 임차·구독까지 수의

** 13개 부처의 혁신제품 신청·지정 정보를 혁신장터에 연계하고, 혁신장터를 통해 통합 신청 및 관리

- **(혁신제품 시범구매)** 부처별 시범구매사업을 조달청으로 통합 운영하여 첨단분야에 집중투자하고, 중기부 기술개발제품 실증사업과 연계 종합지원*
 - * 구매비(조달청) + 제품의 설치·시험·철거비(중기부)까지 종합 지원
- **(민간판로)** 부처주관 공공전시회, 中企전용 판로채널, 방송광고비 할인, 스타트업 지원사업 등 부처간 협업을 통해 민간시장 판로도 병행 지원
 - * (중기부) 중기전용 판로채널(중기전용판매장, 동반성장물, 공용홈쇼핑), (코바코) TV 라디오 방송광고 제작비 지원 및 광고비 할인, (중기부) 기업동반성장지수평가, (무역협회) 스타트업 지원사업 등
- **(금융·투자)** 대출금리 및 보증수수료 우대, 심사기준 완화 등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벤처투자자 대상 투자 설명회**, 정책펀드 등 투자정보 상시 제공
 - * 기보('23.9월), 기은(9월), 산은 수은(11월), 수은(11월) MOU 체결 → 신보, 은행권청년창업재단 등 확대
 - ** 기은 'IBK창공데이(2.29)', 산은 'KDB넥스트라운드(3.22)', 디캡프 '디데이(8월)' 공동 개최
- **(전문인력 양성)** 국내외 조달 전문인력 훈련과정*을 신설하고, 민간전문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공공조달관리사' 자격제도 도입
 - * 기업 재직자(연 500명)까지 교육을 확대하여 글로벌 조달시장 전문인력 양성
- **(채용지원)** `고용24고용노동부` 채용 테마월에 혁신기업관 설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및 병역지정업체 선정 추천에 혁신적 조달기업 우대
- **(혁신제품 R&D)** 혁신제품 R&D 사업의 유형을 다양화하여 확대하고, 혁신R&D 성공시 혁신제품 지정평가 간소화 및 시범구매 우대
 - * 우수 연구개발에 대한 혁신제품 연계는 OECD 혁신사례로 선정('21년 과기부)

② 해외조달시장 수출 촉진

- **(해외실증)** 혁신제품 해외실증 규모 확대('23)12억→('24)50억원 및 대상기관*을 다양화하고, 해외무역관 코트라를 통한 수출컨설팅, 바이어 매칭 지원 신설
 - * ('23년) 코이카, 코트라 → ('24년) 해외공공기관, 진출희망기업 등 경로 추가
- **(해외인증)** 해외인증지원단산업부, 해외규격 인증지원사업중기부 등을 통해 해외실증 참여기업에게 수출의 첫 관문인 해외인증 취득을 지원
- **(ODA)** 각 부처의 ODA 사업에 혁신제품 매칭 및 지원을 확대*하고, ODA컨설팅, 개발협력 혁신솔루션 기업 선정 시 혁신제품 기업 우대
 - * [외교부-코이카] ('23년) 인도적 지원 혁신제품 12억원(포터블 X-ray, 스마트소화기) → ('24년) 30억원
- **(수출바우처)**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조달특화 바우처 신설('24년)10억원 및 각 부처의 수출바우처에 혁신기업 참여 우대
- **(맞춤형 통합정보)** ITC 글로벌 조달정보*를 기업별 산업별로 맞춤 제공, 해외입찰, ODA 등 유관기관 정보를 해외조달정보센터조달청에 연계
 - * ITC(International Trade Center, UN·WTO 공동설립) Procurement Map, 190여개국 입찰정보 제공
- **(신속대응 패키지)** 해외에서 혁신제품 수입문의 시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수출 조과정(수요파악→기업 선별·매칭→각 부처 맞춤형지원)을 패키지로 지원

③ 혁신·기술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 활성화

- **(벤처창업)** 각 부처 지정 우수 창업·벤처기업은 '벤처기업 전용물(벤처나라)' 등록 시 우대하고, 로봇 등 정책지원 분야는 나라장터 쇼핑물 공급 추진
- **(컨설팅)** 정보 부족으로 공공조달에 참여하지 못하는 초보기업에 조달시장 진입·활용 정보를 원스톱 제공하는 「공공조달 길잡이」 도입
- **(혁신제품 지정)** 각 부처에서 혁신성 공공성을 인정한 제품은 혁신제품 지정 시 간소화된 요건 적용 또는 심사 면제
 - * 혁신의료기기, 소부장 으뜸기업, 지자체 R&D 연구개발기업, ODA 솔루션기업 등

④ One-Stop 협업 지원체계 마련

- (범부처T/F) 「신성장전략 T/F」를 통해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신규 과제 발굴 → 산하 총괄반(기재부 차관보 반장, 각 부처 국장급) 운영
- (원스톱서비스) 기업지원 전담창구(single window)로 「혁신제품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원스톱으로 각 부처의 지원사업 정보제공 및 서비스 신청 지원

< 추진방향 및 세부 추진계획 >

목표

「부처간 협업」을 통해 「혁신적 조달기업」의
「성장·도약」 및 「글로벌 진출」을 전방위 지원

추진 과제

(전략1)
혁신적 조달기업
성장·도약
(Scale Up)

- ① 공공판로 효율화 및 혁신제품 시범구매 성과 제고
- ② 부처간 협업을 통한 전시회, 민간시장 등 다각적 판로지원 강화
- ③ 정책금융을 통한 금융 투자지원 확대
- ④ 공공조달 전문인력 양성 및 조달기업 채용 지원
- ⑤ 혁신제품 R&D 확대 및 혁신제품 지정과 연계 강화

(전략2)
해외조달시장
수출 촉진

- ① 수출 유망 혁신제품의 해외실증 및 해외인증 확대
- ② 혁신제품 ODA 참여 활성화를 통해 수출 촉진
- ③ 수출바우처, 맞춤형 통합 정보 제공 등 해외조달시장 개척 인프라 보강

(전략3)
혁신·기술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 활성화

- ① 잠재 조달기업 발굴 및 컨설팅 강화
- ② 각 부처가 혁신성·공공성을 인정한 제품에 혁신제품 지정 확대

(전략4)
One-Stop 협업
지원체계 마련

- ① 이행 점검+제도개선을 총괄하는 「신성장전략 T/F」 운영
- ② 혁신제품 지원센터를 통한 기업수요 맞춤형 One-Stop 서비스 제공

정부부처 합동
(환경부)

비상경제장관회의
- 글로벌탐 기후환경 녹색산업 육성방안

2024-02-26

2027년까지 그린스타트업 1,000개 육성을 목표로 이차전지 순환이용성 향상기술 등 10개 기술을 국제(글로벌) 선도 녹색기술로 선정하여 연구개발(R&D) 등을 집중 지원하는 한편, 녹색융합특화단지(클러스터) 추가 구축(現: 2개소 → '28: 10개소)하고 4천억원의 녹색수출펀드를 조성해 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힘

정책 여건 주요 내용으로는

① 탄소중립 및 녹색전환의 시대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 규범의 확대와 세계 각국의 전방위적 탄소중립 정책 채택*에 따라 글로벌 기업 환경도 변화

* 美 증권거래위원회 기후공시 의무화 추진, EU 기업지속가능성정보 공시 표준안 채택('23.12), 日 그린성장전략('20), 中 2060 탄소중립 달성 선언('20) 등

- 탄소중립, ESG가 투자의 핵심 요인으로 자리 잡으면서 기업규모나 국내·외를 막론하고 공급망 전반의 녹색전환이 요구*되는 추세

* 글로벌 기업은 자사뿐만 아니라 공급망 내 관련 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 촉진을 요구하고 있고, 78%는 자사의 탄소전환을 저해하는 공급자와 계약 해지 의사 천명(스탠다드 차티드, '21)

② 자원 안보의 대안으로서 순환경제 부상

- 우리나라는 반도체·배터리 등에 쓰이는 실리콘·리튬 등 유가금속의 90% 이상을 수입하고 있으며, 첨단 산업 용수 수요*도 빠르게 증가

* 15개 첨단산업 물 수요량은 하루 110만 톤에 이르며 이는 부산시 전체 하루 급수량을 초과

- 환경규제 강화, 코로나19 등으로 심화된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에 대해 순환경제 시장이 안정적 자원 확보 수단으로 주목되며 급성장*

* 순환경제 시장은 '22년 440조 원→'26년 930조 원 규모로 성장 예상(딜로이트, '23)

③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기술·산업 중요성 증대

-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재난 대응, 환경유해인자 관리를 위한 녹색기술 수요가 증대하고 녹색기술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가 급증

* “향후 새로운 유니콘 기업은 탈탄소·지속가능성 분야에서 나올 것”(블랙록, '23), 기후기술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가 '20~'21년 사이에만 3배로 확대(PwC, '21)

-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려면 세계 최고 녹색기술 개발과 유망기업 육성으로 신시장을 창출하고 연관산업의 녹색전환을 이끌 필요

< 그간의 성과 및 한계 >

분야	성 과	한 계
녹색 기업 육성	- 예비그린유니콘 2개사 육성('23) - 그린스타트업 385개사 육성(~'22)	• 창업 후 투자유치 미흡으로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에 한계 - 기술성숙도가 투자의 중요 요인이나 실증기회 부족으로 기술성숙에 한계, 투자자 관점의 지원 미흡 ※ 16개국 중 기후테크·유니콘 스타트업 비율 꼴찌(아산재단, '23) ※ “시장 진출에 기술 실증이 필수적인데, 환경분야 실증처는 대부분 공공시설이라 실증장소 확보 절차가 까다로워”(CES2024 혁신상 수상 환경기업 간담회, '24.2) • 정부지원의 사각지대 발생 ※ (사례) 아이디어는 있으나 행정역량 또는 담보력 부족으로 융자 등 지원 수혜 불가, 매출 대비 투자가 급성장한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배제
환경 R&D	• 환경기술수준 최고국 대비 81.1%('20) 달성 • 환경 R&D 매출액 8,651억 원('23)	• 사업구조 경직성, 기술지정형 추진 방식으로 시장 수요 및 기술 변화 탄력적 대응에 한계 • 지자체, 기업 등과 연계한 현장 적용 성과 창출 미흡 - 사업화 건수 및 매출액 증가가 답보 상태

해외 진출	'23년 해외수주 20조 원 달성	- 국내 녹색산업 기반 없이는 일회성 수주에 그칠 우려 - 국내 기업 보유기술과 해외수요를 반영한 전략 부재 - 해외 프로젝트 수주를 위한 자금 필요
정부- 기업 소통	'23년 14차례 기업 현장소통(현장방문, 간담회 등) 145건 건의 중 63건을 수용해 업계 애로 해소	- 개별기업 민원 성격의 건의 다수 발생 - 산업 대표가 아닌 개별 기업으로서 참여, 애로사항에 대한 업계 내부 토의 부족 - 건의에 대한 정책 반영 등 후속조치 관리 미흡으로 부정적 인식 발생 우려

< 녹색산업 글로벌 선도국가 도약 >



국방부

민군(民軍) 상생을 위해 역대 최대규모의 군사시설보호구역 339㎢ 해제

2024-02-26

국방부는 군사시설보호구역* 최소화를 통한 국민권익 증진을 위해 여의도 면적의 117배에 달하는 보호구역 339㎢를 해제함

* 군사시설보호구역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구역

이는 2007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이 제정된 이래 최대규모의 보호구역 해제로, ▲군 비행장 주변 287㎢,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접경지역 38㎢, ▲민원이 있는 지역 등 14㎢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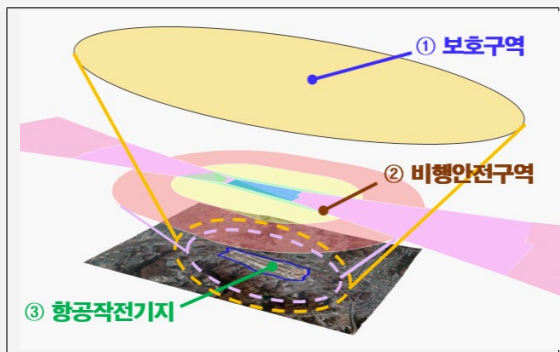
그간 보호구역을 지속 해제하여 왔으나, 보호구역은 여전히 국토 면적의 8.2%에 달해 주민과 지자체의 해제 요구는 지속되어 왔음

이런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국방부는 군사 대비 태세를 유지하면서 국민권익을 증진시키고 민과 군이 상생할 수 있도록, ▲해제하더라도 작전적으로 문제가 없는 지역, ▲주민 불편에 따른 민원이 있는 지역 등을 위주로 보호구역 해제를 적극 검토하여 왔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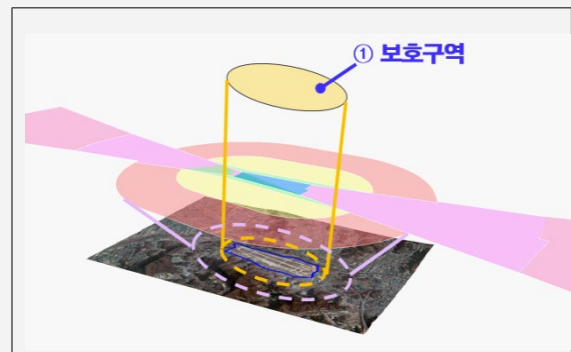
주요 내용으로는

① 군 비행장 주변 보호구역 287㎢(서산 등 7개 지역) 해제

- 군 비행장 주변 보호구역은 기지 방호를 위해 지정하고 있는데 기지 방호에 필요한 최소 범위로 축소



(보호구역 해제 전)



(보호구역 해제 후)

- 군 비행장 주변 보호구역이 해제되면, 비행안전구역별 제한고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군 협의 없이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축, 건축물 용도변경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되어 주민 불편이 대폭 해소됨

② 접경지역 38㎢(철원 등 4개 지역) 해제

- 접경지역이지만 군사기지·시설 유무, 취락지역·산업단지 발달 여부 등을 고려하여 군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보호구역 해제

- 보호구역이 해제되면, 높이 제한 없이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축이 가능해져 주민들은 재산권을 온전히 보장 받게 되고, 토지 개간 또는 지형 변경이 가능해져 지역개발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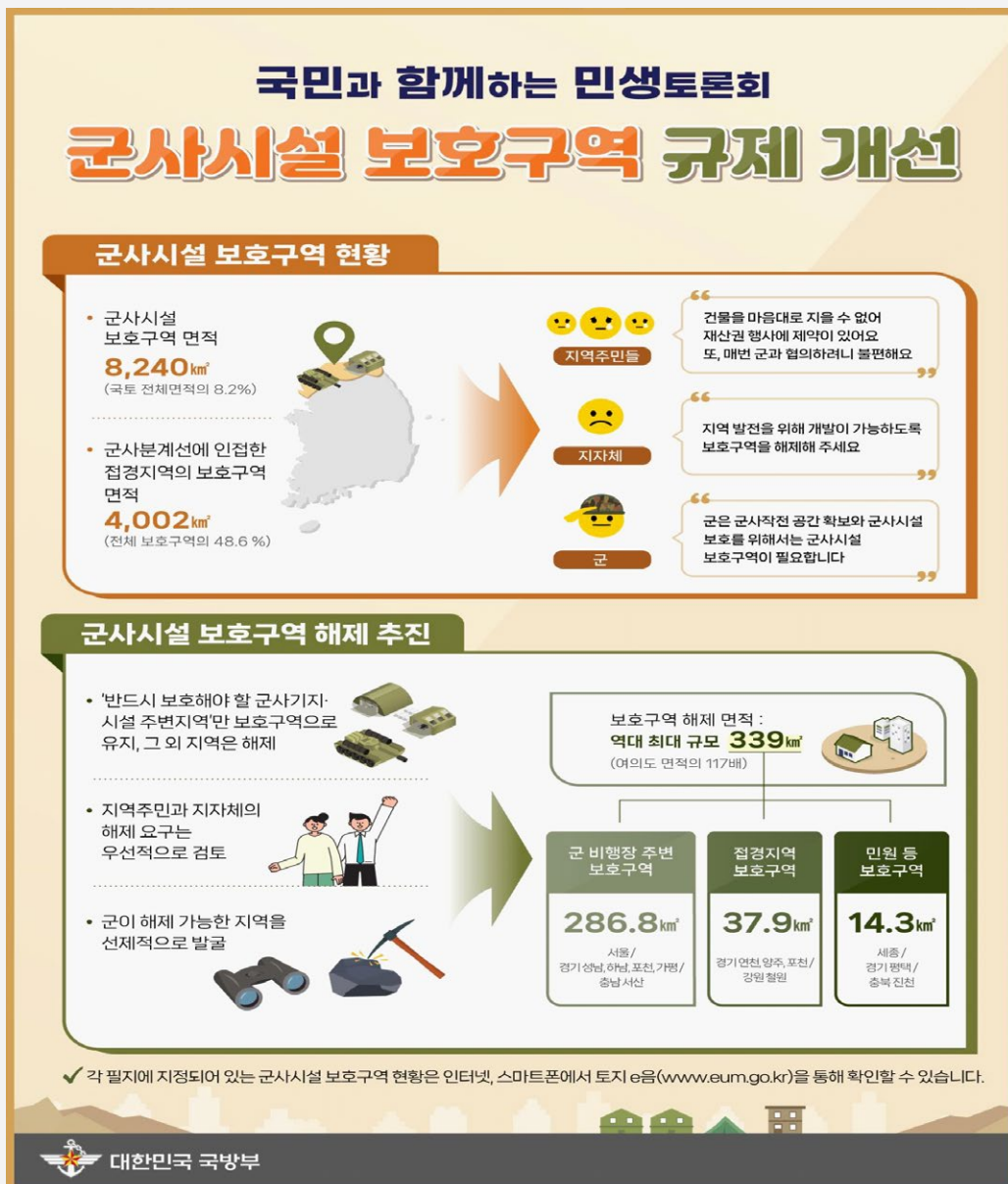
③ 민원이 있는 보호구역 등 14km²(고덕신도시 내 초등학교 등 2개 지역) 해제

-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내 민세초등학교는 학교부지 일부가 인근 보호구역에 저촉되어 개교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 보호구역 해제로 금년 9월 개교가 가능할 전망
- 군 비행장 이전 민원이 있던 세종시 연기비행장은 '25년 조치원비행장으로 통합이전될 예정으로, 금년에 연기비행장 보호구역을 선제적으로 해제

④ 보호구역을 해제하기 어려운 103km²(파주 등 4개 지역)에 대해서는 일정 높이 이하 건축물의 신축 등에 대한 군 협의를 생략*하여 보호구역이 해제된 것과 같은 효과를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였음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14조(보호구역에서의 협의업무의 위탁 등)

<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



< 군사시설 보호구역 변동지역 세부현황 >

◦ 제한보호구역 해제 : 338,950,648m²

구분		대상 지역	면적(m ²)
서울특별시		· 강남구 개포동 · 대치동 · 세곡동 · 수서동 · 율현동 · 일원동 · 자곡동 일대	46,423,834
		· 서초구 내곡동 · 신원동 · 염곡동 · 원지동 일대	
		· 송파구 가락동 · 거여동 · 마천동 · 문정동 · 방이동 · 삼전동 · 석촌동 · 송파동 · 오금동 · 잠실동 · 장지동 일대	
경기도	성남시	· 분당구 백현동 · 삼평동 · 서현동 · 수내동 · 야탑동 · 운중동 · 율동 · 이매동 · 정자동 · 판교동 · 하산운동 일대	71,558,388
		· 수정구 고등동 · 금토동 · 단대동 · 둔전동 · 북정동 · 사송동 · 산성동 · 상적동 · 수진동 · 시흥동 · 신촌동 · 신흥동 · 심곡동 · 양지동 · 오야동 · 창곡동 · 태평동 일대	
		· 중원구 성남동 · 금광동 · 은행동 · 상대원동 · 여수동 · 도촌동 · 갈현동 · 하대원동 · 중앙동 일대	
	하남시	· 감이동 · 학암동 일대	3,655,522
	과천시	· 막계동 일대	9,123
	평택시	· 고덕동 일대	52,125
	포천시	· 가산면 감암리 · 금현리 · 마산리 · 방축리 일대	20,868,170
		· 군내면 용정리 · 유교리 일대	
		· 선단동 · 설운동 · 어룡동 · 자작동 일대	
		· 관인면 사정리 · 삼율리 · 중리 일대	
	양주시	· 광적면 가납리 · 석우리 일대	15,647,231
		· 남면 상수리 · 입암리 · 한산리 · 황방리 일대	
		· 백석읍 방성리 · 오산리 일대	
		· 은현면 도하리 · 봉암리 일대	
	연천군	· 군남면 남계리 · 삼거리 · 황지리 일대	11,999,120
		· 미산면 우정리 · 유촌리 일대	
		· 왕징면 노동리 · 무등리 일대	
		· 전곡읍 양원리 일대	
	가평군	· 상면 연하리 · 원흥리 · 태봉리 · 향사리 일대	10,401,276
		· 조종면 대보리 · 마일리 · 신하리 · 현리 일대	

구분		대상 지역	면적(㎡)
강원특별 자치도	철원군	· 동송읍 관우리 · 대위리 · 오덕리 일대	3,009,780
		· 철원읍 읍이리 · 화지리 일대	
세종특별자치시		· 누리동 · 산울동 · 세종동 · 용호동 · 한별동 · 해밀동 일대	13,373,235
		· 연기면 놀왕리 · 보통리 · 연기리 일대	
		· 연동면 문주리 일대	
		· 연서면 봉암리 · 부동리 · 월하리 일대	
충청북도	진천군	· 문백면 도하리 일대	908,241
		· 초평면 연담리 · 은암리 · 진암리 일대	
충청남도	서산시	· 고북면 가구리 · 기포리 · 남정리 · 봉생리 · 사기리 · 신상리 · 신송리 · 신정리 · 양천리 · 용암리 · 정자리 · 초록리 일대	141,044,603
		· 부석면 강당리 · 대두리 · 지산리 · 취평리 일대	
		· 운산면 거성리 일대	
		· 음암면 신장리 · 유계리 일대	
		· 인지면 모월리 · 산동리 · 애정리 · 야당리 일대	
		· 해미면 귀밀리 · 기지리 · 동암리 · 반양리 · 산수리 · 삼송리 · 석포리 · 양림리 · 역대리 · 언암리 · 오학리 · 웅소성리 · 읍내리 · 응평리 · 저성리 · 전천리 · 조산리 · 홍천리 · 황락리 · 휴암리 일대	
		· 덕지천동 · 석남동 · 석림동 · 수석동 · 양대동 · 예천동 · 오남동 · 장동 · 죽성동 일대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명	내용	시행일자
기획재정부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4-02-29 시행 (다만, 일부 규정은 시행일 별도 지정)

심각한 저출산 현상에 대응하여 출산·육아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사립학교 사무직원이 받는 육아 휴직수당도 공무원 등과 마찬가지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육아휴직수당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영세 자영업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사업소득 필요경비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노후 생계 지원을 위해 주택 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 상당액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을 완화하며, 건설경기 활성화 및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적용배제 기한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비과세되는 사립학교 사무직원 육아휴직수당의 범위 (제10조의2 신설)**
 - 「사립학교법」에 따라 임명된 사립학교의 사무직원이 해당 학교의 정관 또는 규칙에 따라 지급받는 육아 휴직수당에 대해서는 월 150만원까지 비과세하도록 규정함
- ② **국외근로자 급여 및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비과세 한도 상향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17조의3제1항)**
 - 원양어선 선원 및 해외 건설현장 노동자 등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해당 근로자의 급여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월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하고, 이공계 인력의 발명요육 고취를 위해 직무발명보상금의 비과세 한도를 연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상향함
- ③ **사업소득 필요경비의 인정 범위 확대 등 (제55조제1항제6호의2, 제11호의4 및 제11호의5 신설)**
 -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소규모 자영업자나 퀵서비스 배달원 등 노무제공자가 피보험자로서 부담하는 본인의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를 필요경비의 범위에 추가하고, 사용자가 종업원의 출산 또는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함을 명시함
- ④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 상당액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 완화 (제108조의3제1항제3호)**
 - 주택담보노후연금을 수령한 자가 그 연금과 관련하여 발생한 이자비용 상당액을 연 200만원을 한도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대상 주택의 기준금액 요건을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상향함
- 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적용배제의 대상 확대 및 기한 연장 (제167조의3제1항제12호, 제167조의4제3항제6호, 제167조의10제1항제12호 및 제167조의11제1항제11호 신설, 제167조의3제1**

항제12호의2, 제167조의4제3항제6호의2, 제167조의10제1항제12호의2 및 제167조의11제1항제12호)

-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2채 또는 3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의 적용이 배제되는 주택의 범위에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소형 신축주택 및 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추가함
-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의 적용이 배제되는 기한을 '2024년 5월 9일'에서 '2025년 5월 9일'로 1년 연장함

⑥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별표 3의3 제2호카목 및 제5호이목부터 마목까지 신설)

- 건당 현금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소비자의 요구가 없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업종의 범위에 여행사업, 수영장 운영업, 볼링장 운영업, 컴퓨터 및 주변 기기 수리업 등 13개 업종을 추가함

기획재정부**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4-02-29 시행
(제3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예정)

합병차익 중 재평가적립금 상당액의 감액배당을 익금불산입되는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연결법인 간 결손금 이전에 따른 손익의 배분·정산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인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재평가적립금 상당액의 감액배당 시 익금산입의 한도 및 연결법인 간 손익 정산금의 산정·배분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를 적용받지 않는 법인의 범위에 학교·병원 등을 추가하고, 기업의 경영활동 지원 및 가족친화적 문화 조성을 위해 손비의 인정 범위를 확대·명확화하며, 토지개발사업에 대한 과세를 합리화하기 위해 토지 양도 수익의 익금산입에 관한 특례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 미적용 대상 확대 (제10조제1항제7호 신설)

-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 이월결손금의 공제 한도(소득의 100분의 80)를 적용받지 않고 소득의 100분의 10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법인의 범위를, 지금까지는 중소기업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총 7개 유형의 법인으로 한정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학교법인·사회복지법인·국립대학병원 등 법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까지 확대함

② 자본전입 시 과세되는 잉여금 범위 확대 (제12조제1항제5호 신설)

- 상환주식의 발행으로 법인 내에 유보되어 있는 주식발행액면초과액 중에서 이익잉여금으로 상환된 금액은 형식적으로는 자본잉여금에 해당하나 실질적으로는 이익잉여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이를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 사실상 이익잉여금을 주식배당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으므로 해당 금액을 자본전입 시 과세되는 잉여금의 범위에 추가함

③ 재평가적립금 상당액 감액배당 시 익금산입의 한도 등 구체화 (제17조 신설)

- 합병법인이 합병차익 중 피합병법인의 재평가적립금 상당액을 감액배당하는 경우 합병차익에서 피합병법인의 자본금 상당액 등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그 감액배당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합병법인이 합병차익 중 일부만 감액배당하는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의 재평가적립금 상당액을 먼저 배당하는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등 재평가적립금 상당액 감액배당 시 익금산입의 한도 및 배당 순서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

④ 손비의 인정 범위 확대·명확화 (제19조제3호, 제19조제3호의2 신설)

- 내국법인이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에 대한 인건비의 경우 해당 내국법인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인 경우에만 손비로 인정하던 것을 모든 기업에 대해 손비로 인정하고, 내국법인이 임직원의 출산 또는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비용이 손비에 해당함을 명시함

⑤ 토지개발사업 완료 전 일부 토지 양도 수익의 익금산입에 관한 특례 마련 (제68조제7항 신설)

- 토지개발사업을 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해당 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그 사업의 대상이 되는 일부 토지를 양도한 경우 그로 인한 양도 수익은 해당 토지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전부 산입하지 않고 토지개발사업의 작업진행률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익금에 나누어 산입할 수 있도록 허용함

⑥ 연결법인 간 손익 정산금의 산정·배분 방법 구체화 (제120조의26 신설)

- 다른 연결법인의 결손금을 이전받은 연결법인에 대한 정산금은 해당 결손금을 이전받기 전의 소득금액 등을 기초로 과세표준 및 세율을 조정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고, 다른 연결법인에 결손금을 이전한 연결법인에 대한 정산금은 해당 결손금을 이전하기 전과 후의 세액 차이에 결손금 이전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되, 각 연결사업연도 결산 전에 해당 연결법인의 주주가 동의하는 등의 경우에는 정산금을 '0'으로 할 수 있도록 함

기획재정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4-02-29 시행

공공주택 공급의 촉진을 통해 국민의 주거안정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에 공공주택사업자가 소유하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추가하고, 건설경기의 활성화를 위하여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 주택의 범위에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소형 신축주택 및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제4조제1항제25호 신설, 제4조의3제1항, 제4조의3제3항제3호, 제4조의3제5항, 제5조의3제1항 등)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4-02-29 시행

(다만, 일부 규정은
시행일 별도 지정)

간이과세의 확대를 통해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세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가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포기 신고한 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전이라도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다시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간이과세 적용을 포기할 당시 신규로 사업을 시작했던 개인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간이과세 포기 신고 후 3년이 되는 과세기간 이전이라도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다시 적용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서민 주거생활의 지원을 위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토지의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보건사업 지원 강화를 위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 용역의 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사업자등록 직권말소 사유 추가 (제15조제2항)

- 법률 개정으로 사업자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하는 사유로 사실상 폐업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가 추가됨에 따라,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경우를 사업자가 부도발생, 고액체납 등으로 도산하여 소재 불명인 경우 등으로 구체화함

② 외국항행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의 예외적 허용 (제30조제4호 신설)

- 화물선적 시 운임청구, 선하증권 교부 및 세금계산서 발급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외국항행용역의 국제적 관행을 고려하여, 외국항행용역의 공급시기가 선하증권의 발행일로부터 90일 이내인 경우 외국항행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대가를 받고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함

③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의 확대 (제35조제18호, 제41조 및 제42조)

- 취약계층 등에 대한 의료보건사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의료보건 용역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자가 제공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과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사업의 용역으로 제한하던 것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령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자가 제공하는 의료보건 용역으로 확대함
- 서민 주거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의 범위에 토지소유자가 주택을 분양받은 자에게 임대하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 용역을 추가함
- 고용알선업 등 유사 업종과의 형평성 제고 및 인력공급 시장 양성화를 위하여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인적용역의 범위에 「직업안정법」에 따른 근로자공급 용역과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그 사업자의 시설 또는 설비를 이용하여 제공하는 물건의 제조 등의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단순 인력공급 용역을 추가함

④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대상 확대 (제88조제1항)

- 소규모 사업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통신판매업자가 판매를 대행 또는 중개하는 부가통신사업자를 통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통신사업자로부터 전자적으로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대상으로 추가함

⑤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확대 등 (제109조제1항)

- 자영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간이과세가 적용되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 기준을 현행 8천만원에서 1억4백만원으로 확대함

⑥ 간이과세 재적용 대상 추가 (제116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 세금계산서 발급 등을 위해 간이과세자 규정의 적용을 포기하였으나 직전 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8백만원 이상 1억4백만원 미만으로 간이과세자 규정을 적용받아도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 규정의 적용을 포기한 후 3년 이내라도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다시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기획재정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4-02-29 시행

(다만, 제2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

수소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탄력세율이 적용되는 석유가스의 범위에 ‘수소를 제조하기 위한 수소추출설비나 연료전지에 공급하는 석유가스’를 추가하고, 적용 세율을 석유가스 중 프로판에 대해서는 킬로그램당 14원,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해서는 킬로그램당 176.4원으로 각각 인하하는 한편,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실제로 양육하는 사람에 대하여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면제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승용자동차를 구입하는 사람이 자녀와 세대가 분리된 경우에는 자녀의 취학, 질병 등 부득이하게 함께 거주할 수 없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승용자동차의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은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이 반입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승용자동차를 같은 세대의 배우자에게 양도하거나 이혼으로 자녀와 함께 거주하지 않게 되는 등의 경우에도 개별소비세 납부 의무를 면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제2조의2제1항제2호, 제9조제1항, 제19조의3제1항제3호 신설, 제33조제1항제2호, 제34조제4항제5호나목)

기획재정부

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4-02-29 시행

탁주·맥주의 세율에 적용하던 물가연동제를 폐지하고 탄력세율 방식으로 세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주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탁주·맥주의 가격변동지수 및 세율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다양한 맥주 개발·제조를 촉진하고 소규모 주류사업자의 창의적인 주류제조 여건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른 나라에서도 맥주 제조의 재료로 허용되는 빵, 다랑어포, 굴을 맥주에 첨가할 수 있는 재료에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제7조제1항 삭제, 별표 1 제2호가목)

가상융합산업의 진흥과 지원 및 규제 개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

주요 내용으로는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하여 가상융합산업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함 (제6조)
- ② 가상융합 플랫폼을 운영하는 자 중 매출액 등이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 (제9조)
- ③ 가상융합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가상융합기술의 개발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의 추진, 가상융합산업 관련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가상융합서비스 등에 관한 기술·통신·보안·호환성·상호운용성 등과 관련된 표준화, 가상융합사업자에 대한 금융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함 (제10조부터 제16조까지)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가상융합산업 진흥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제17조)
-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역별 가상융합산업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가상융합산업지원센터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제19조)
-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제21조 및 제22조)
- ⑦ 정부는 가상융합산업 관련 국제협력을 활성화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각종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제24조)
- ⑧ 가상융합산업 관련 협회가 이용자를 보호하고 안전하며 신뢰할 수 있는 가상융합기술 또는 가상융합서비스 등의 제공·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자율규제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함 (제27조)
- 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가상융합사업자 등의 제안을 검토한 결과 임시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등의 경우 임시기준의 마련 또는 정비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제28조)
- ⑩ 정부가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각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이용자의 권익 보호와 건전한 가상융합세계 생태계의 조성 및 유지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 (제30조 및 제31조)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24-02-29 시행

입주기업체의 제품 판매를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공장에서 연구·개발하여 외부에서 위탁생산된 제품을 통신판매하는 시설 등을 공장의 부대시설로 허용하고, 산업단지 입주기업체협의회의 설립 기준을 종전에는 해당 산업단지의 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입주기업체의 수가 '10개 이상'인 경우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산업단지의 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입주기업체의 수가 '4개 이상'인 경우로 완화하여 소규모 산업단지도 입주기업체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제2조제8호나목, 제11조제1항제2호, 제15조, 제26조의2 삭제 등)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2024-08-28 시행예정

대한민국 국민이 실질적인 지배력을 가지는 법인을 외국에 새로 설립하는 '국외 창업'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국외 창업기업에 대해서도 이 법에 따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며, 창업활성화 지원 사업 및 재창업지원사업의 수행기관으로 다양한 형태의 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성실경영 평가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정한 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정이 취소된 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에 대해서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다시 지정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제2조제2호의2 신설, 제2조제3호의2 신설, 제5조의2 신설, 제10조제3항, 제42조제3항 등)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4-03-15 시행예정

(다만,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

창업지원사업 참여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거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지원금을 환수하도록 하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그동안 운영실적이 저조한 창업지원정책협의회를 폐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 개정(법률 제19732호, 2023. 9. 14. 공포, 2024. 3. 15. 시행 및 법률 제19825호, 2023. 10. 31. 공포, 2024. 5. 1. 시행)됨

이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금의 전액 이내의 범위에서 환수하도록 하고,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 이내의 범위에서 환수하도록 하는 등 지원금 환수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창업지원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효율적인 업무수행 및 지역 여건에 맞는 정책수립과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창업기업 확인 및 그 취소의 권한을 위임하며, 창업진흥원에 창업기업확인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업무를 위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제2조제1항제4호, 제5조 삭제, 제27조제3항 신설, 제27조제4항 신설, 제38조제1항 등)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4-03-15 시행예정

벤처투자회사 대주주의 주식처분명령 불이행에 대한 제재를 형벌에서 과태료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728호, 2023. 9. 14. 공포, 2024. 3. 15. 시행)됨

이에 따라, 벤처투자회사 대주주가 주식처분명령을 불이행한 경우 1차 위반 시 300만원, 2차 위반 시 500만원 및 3차 이상 위반 시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제2조제1항제4호, 제5조 삭제, 제27조제3항 신설, 제27조제4항 신설, 제38조제1항 등)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2024-08-28 시행예정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취득한 후 부당하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기술유용으로 인한 피해보상제도에 손해액 추정 규정을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별표 2 제2호)

금융위원회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2024-05-28 시행예정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가상자산을 포함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유사수신행위에 포함하도록 함 (제2조 각 호)

금융위원회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2024-08-28 시행예정

금융회사가 일정한 절차에 따라 자체점검을 상시적으로 실시하여 필요한 경우 계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체, 송금 또는 출금을 지연시키거나 일시 정지하는 임시조치를 하도록 하고, 임시조치에 관한 통지·해제 및 본인확인조치의 내역을 서면, 녹취 등 방법으로 보존하도록 하며, 고객이 계좌 개설을 신청하는 등의 경우 금융회사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를 위하여 금융거래의 목적을 확인하도록 하고, 확인결과 금융거래 목적이 전기통신금융사기와 관련되어 있는 등의 경우에는 계좌의 개설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며,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신고 및 제보 접수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경찰청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를 설치하는 한편,

계좌명의인이 해당 계좌가 피해금 편취를 위하여 이용된 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여 이의제기하는 경우 피해금을 제외한 금액의 지급정지 등을 종료하도록 하고, 거짓 피해구제 신청으로 인하여 계좌명의인이 피해를 입은 경우 거짓 피해구제 신청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며, 금융회사 등이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사기이용계좌와 피해의심거래계좌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고, 금융회사가 해당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임시조치 또는 지급정지 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제2조의6 신설, 제2조의7 신설, 제4조제1항제4호,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제2호 등)

2. 입법(행정) 예고 법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명	예고 법령안	의견접수기간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4.02.28. ~03.13.

첨단산업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통합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시설을 추가하고, 기회발전특구 창업기업 세액감면 신설에 따라 세액감면 적용을 위한 사업용 자산의 범위를 구체화하며, 유턴기업 세액감면 적용 시 업종 유사성 확인을 받은 경우 제출서류를 추가하는 한편,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해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촬영제작비용의 범위를 정하는 등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추가공제 적용을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중소기업 독립성 요건 중 외국법인의 자산총액 계산방법 명확화 (안 제2조)
 - 최다출자자인 외국법인의 자산총액 원화 환산 기준일, 방법 규정
- ②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업종명 명확화 (안 제4조의3)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업종을 표준산업분류상 업종명과 동일하게 수정
- ③ 소비성서비스업 세부범위 구체화 (안 제4조의4)
 - 시행령에서 위임한 소비성서비스업 세부내용 규정
- ④ 국가전략기술 등 해외 위탁 R&D 세액공제 적용 범위 확대 (안 제7조)
 - 국가전략기술 바이오의약품 관련 해외위탁임상시험의 세액공제 허용
- ⑤ 기회발전특구 창업기업 세액감면 적용을 위한 사업용 자산의 범위 규정 (안 제8조의3)
 - 대통령령에서 위임한 기회발전 특구 창업기업 세액감면 감면한도 계산시 필요한 사업용자산의 범위 규정
- ⑥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추가공제 적용을 위한 세부사항 규정 (안 제13조의9)
 - 대통령령에서 위임한 촬영제작비용 등 추가공제 요건의 구체적 범위 규정
- ⑦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의 기업소득 산정시 차감항목 규정 정비 (안 제45조의9제5항 삭제)
 -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의 기업소득 산정시 차감항목 중 외국기업 지배 지주회사가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을 삭제함에 따라 관련 시행규칙 규정 삭제
- ⑧ 유턴기업 세액감면 적용 시 제출서류 추가 (안 제47조의2)
 - 국내복귀 업종요건을 완화함에 따라 제출필요 서류 추가
- ⑨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사업화시설 범위 확대 (안 별표6 및 별표6의2)
 - 신성장사업화시설에 방산분야를 신설하고, 국가전략기술 반도체 분야 등 세부 기술을 확대지정

※ 문의처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전화: 044-215-4131, 팩스: 044-215-8063)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를 적용하여 이월된 감가상각비 중 남은 금액이 있는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 해당 금액 모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소형 신축주택 및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세 부요건 및 확인절차 등을 구체화하며,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용어를 정비하고, 자녀세액공제 대상에 손자녀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손익차등형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 규정 보완 (안 제13조제9항 신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8제8항에 따른 손익차등형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투자자별로 차등하여 계산한 손익을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산정하도록 함
- ② 간주임대료 계산 및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기준 이자율 조정 (안 제23조 및 제57조)
 -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및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기준 이자율을 현행 연 2.9%에서 연 3.5%로 조정
- ③ 폐업시 이월된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처리규정 정비 (안 제42조)
 - 폐업시 사업여건 악화 등으로 불가피하게 간편장부대상자로 전환되는 경우도 이월된 감가상각비 중 남은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도록 개정
- ④ 30세 미만 미혼자의 1세대 판정 소득기준 구체화 (안 제70조 신설)
 - 30세 미만 미혼자(미성년자 제외)를 1세대로 보는 소득기준 판정시 포함되는 소득의 범위를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을 합한 금액으로 함
- ⑤ 소형 신축주택 및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증과배제 확인절차 등 신설 (안 제82조 신설)
 - 준공일의 개념을 명확화하고, 소형 신축주택 과세특례 세부 요건을 구체화하는 한편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세부 요건과 확인절차를 정함
- ⑥ 조문정비 (안 제63조의3, 제88조, 제96조의4)
 - 인용중인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 조문 정비
- ⑦ 신설 서식 규정 (안 제100조)
 - 소득세법 제164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등 거래명세서 서식(별지 제30호의5서식) 신설

※ 문의처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tel:044-215-4211) (전화: 044-215-4211, 팩스: 044-215-8067)

토지 양도 수익의 익금산입에 관한 특례의 대상이 되는 토지개발사업의 범위를 정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최근 금리 수준을 반영하여 부동산임대에 의한 사업수입금액의 추계 시 적용되는 이자율을 변경하고, 금형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간주임대료 계산 기준 이자율 조정 (안 제6조)
 -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기준 이자율을 연 1천분의 29에서 연 1천분의 35로 조정함
- ② 업무용승용차 손금산입 시 전용번호판 부착요건 구체화 (안 제27조의2)
 - 손금불산입하는 법인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요건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법인업무용 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경우로 함
- ③ 진행기준 적용 토지개발사업의 손익인식시기 보완에 따른 토지개발사업 적용범위 규정 (안 제33조)
 - 토지개발사업을 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 수익을 작업진행률에 따라 익금에 산입할 수 있는 토지개발사업의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함
- ④ 주택도시보증공사의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전환손실 산출 시 계산방식 규정 (안 제39조의4)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전환손실 산출 시 2022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 미경과보험료 적립금 및 '23사업연도에 계상된 책임준비금에 적용하는 계산식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 ⑤ 연결산출세액 정산을 하지 않는 완전지배 범위 구체화 (안 제60조의5)
 - 연결납세대상 법인 중 연결산출세액을 정산하지 않을 수 있는 완전지배 자법인 여부 판단시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할 수 있는 주식의 범위를 규정함
- ⑥ 금형 감가상각 내용연수 변경 (안 별표 제5호)
 - 금형에 대해서는 구조 또는 자산별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가 적용되도록 규정함
- ⑦ 업종별 감가상각 내용연수표 현행화 (안 별표 제6호)
 - 한국표준사업분류 제11차 개정 등을 반영하여 업종별 감가상각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규정함

※ 문의처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전화: 044-215-4223, 팩스: 044-215-8073\)](tel:044-215-4223)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 주택의 범위에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소형 신축주택 및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소형 신축주택 및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확인 절차 등을 구체화하는 한편, 임대주택 등 합산배제 신고서 등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조문정비 (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 한자식 용어를 정비하고 조문 순서를 재배치하는 한편,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서식이 신고 대상 유형별로 신설됨에 따라 기존 서식을 이동하는 등 관련 인용조문을 정비함
- ② 전통사찰보존지 내 주택 부속토지의 연간사용료 계산방법 명확화 (안 제3조)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24호에 따라 전통사찰보존지 내 주택 부속토지의 연간사용료를 계산할 때 임대보증금이 있는 경우 계산방법을 명확화 함
- ③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주택수 산정 제외 적용을 위한 제출 서류 구체화 (안 제4조의2)
 -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신축주택을 취득할 경우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판단을 위한 주택수 산정 제외 신청서를 제출할 때 분양계약서 사본을 첨부하도록 함
- ④ 소형 신축주택 및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중과배제 확인절차 등 신설 (안 제5조 신설)
 - 준공일의 개념을 명확화하고, 소형 신축주택 과세특례 세부 요건을 구체화하는 한편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세부 요건과 확인절차를 정함
- ⑤ 소형 신축주택 및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중과배제 적용 제출 서류 규정 (안 제5조의2)
 - 종소형 신축주택 및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종합부동산세 중과배제 적용을 위해 제출해야할 서식을 규정함

※ 문의처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전화: 044-215-4313, 팩스: 044-215-8066\)](tel:044-215-4313)

국토교통부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2024.02.27.
~04.08.

도심항공교통의 실증 및 상용화 지원을 위한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을 위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 19768, 2023.10.24. 공포, 2024.4.25. 시행)됨

이에 따라 버티포트의 시설 구분, 도심항공교통기본계획 및 현황조사, 실증사업구역 및 시범운용구역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 도심항공교통사업자 지정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버티포트를 구성하는 시설을 기본시설과 지원시설로 구분하고, 추가로 기본시설을 필수시설과 부가시설로 구분함 (안 제2조)
- ② 도심항공교통기본계획에 법 제4조에서 제시한 사항 외 추가되어야 할 사항 및 국가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는 경미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4조)
- ③ 도심항공교통산업 현황조사의 방법 및 대상을 규정함 (안 제5조)
- ④ 실증사업구역의 지정, 변경 및 해제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
- ⑤ 실증사업자의 장비·인력 등 지정기준을 별표 1에 규정함 (안 제7조)
- ⑥ 시범운용구역의 지정·변경·해제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규정함 (안 제8조)
- ⑦ 도심항공교통산업 현황조사의 방법 및 대상을 규정함 (안 제5조)
- ⑧ 버티포트로 지정받을 수 있는 시설 형태를 구분. 또한, 버티포트 지정을 위해 필요한 유형 및 등급을 별표 2에 규정함 (안 제10조)
- ⑨ 도심항공교통회랑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1조)
- ⑩ 도심항공교통사업자의 시설·인력 등 지정기준을 별표 3에 규정함 (안 제12조)
- ⑪ 국공유 재산의 사용료 등의 감면 수준을 규정하되, 공유재산에 대한 세부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 (안 제13조)
- ⑫ 규제신속확인에 필요한 절차 및 제출서류를 규정함 (안 제15조)
- ⑬ 시범운용구역의 운영에 대한 평가 기준,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6조)
- ⑭ 도심항공교통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 필요한 의무보험 사항을 규정함 (안 제17조)
- ⑮ 연구개발사업을 할 수 있는 자,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요건, 해외진출 및 국제협력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을 정함 (안 제19조 제21조)
- ⑯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 중 위탁할 수 있는 업무와 위탁기관을 정함 (안 제22조)
- ⑰ 준공확인증명서를 받기 전 버티포트 사용 또는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버티포트를 사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별표 4에 규정함 (안 제23조)

※ 문의처 : [국토교통부 도심항공교통정책과](mailto:국토교통부_도심항공교통정책과) (전화: 044-201-4302, 팩스: 044-201-5587)

국토교통부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2024.02.27.
~04.08.

도심항공교통의 실증 및 상용화 지원을 위한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 19768호, 2023. 10. 24. 공포, 2024. 4. 25. 시행)됨에 따라 실증사업구역 및 시범운용구역 지정 시 필요한 세부절차 및 고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버티포트개발사업을 하기 위한 요건, 실증사업자·도심항공교통사업자·버티포트개발사업을 하는 자의 행정처분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버티포트를 구성하는 기본시설과 지원시설에 대한 세부 항목을 별표 1에 규정함 (안 제2조)
- ② 실증사업구역의 지정, 변경, 해제 시 고시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함 (안 제4조)
- ③ 실증사업자 지정 신청 및 사업자 지정서 발급 등 관련 서식을 규정함 (안 제5조)
- ④ 실증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을 별표 2에 규정함 (안 제6조)
- ⑤ 시범운용구역의 지정, 변경, 해제 시 고시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함 (안 제7조)
- ⑥ 시범운용구역 지정, 변경, 해제 신청 시 서식 및 첨부 서류를 규정함 (안 제8조)
- ⑦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자가 버티포트 개발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의 신청 서식 및 첨부 서류를 규정. 또한, 재무능력 및 기술능력 등 기준을 별표 3에 규정함 (안 제9조)
- ⑧ 버티포트개발사업을 허가한 경우 고시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함 (안 제10조)
- ⑨ 개발사업시행계획 수립 시 필요한 설계기준 및 개발사업시행계획 수립 시 제출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함 (안 제11조)
- ⑩ 버티포트 준공확인을 위한 준공확인신청서 및 준공확인증명서, 준공확인 전 사용허가 신청서 서식을 규정함 (안 제12조)
- ⑪ 버티포트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을 별표 4에 규정함 (안 제13조)
- ⑫ 시설 형태에 따른 버티포트 지정 시기와 함께 지정 및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관보에 고시해야 함을 규정함 (안 제14조)
- ⑬ 도심항공교통회랑 지정 시기 및 지정 기준을 정함 (안 제15조)
- ⑭ 도심항공교통사업자 신청 절차 및 제출서류를 정하고,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별표 5에 규정함 (안 제16조 제17조)

※ 문의처 : [국토교통부 도심항공교통정책과](http://www.mot.go.kr) (전화: 044-201-4302, 팩스: 044-201-5587)

국토교통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4.02.28.
~04.08.

광역버스 운송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노선 신설의 필요성 등에 대한 타당성 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타당성 평가 내용, 교통 전문기관을 통한 업무의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광역버스 운송사업의 타당성 평가 내용 (안 제6조의2 신설)**
 - 대안경로, 경쟁노선, 통행시간, 통행량, 잠재수요 등의 타당성 평가 내용 신설
- ② **광역버스 운송사업의 타당성 평가 권한 위임 (안 제37조제1항제1호나목 신설)**
 -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로의 권한 위임 사항에 광역버스운송사업 타당성 평가에 대한 권한 추가
- ③ **권한 위탁 전문기관 설정 (안 제38조제5항 신설)**
 - 광역버스 운송사업의 타당성 평가 업무를 교통 전문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한국교통연구원'으로 위탁

※ 문의처 : [국토교통부 교통서비스정책과 \(전화: 044-201-3830, 팩스: 044-201-5581\)](tel:044-201-3830)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4.02.26.
~04.08.

정부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게 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991호, 2024. 1. 9. 공포, 2024. 7. 1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지원대상을 정하고 일부 미비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지원 대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지원을 신청한 소상공인으로 규정 (안 제4조의14제2항 신설)**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재도약과 \(전화: 044-204-7857, 팩스: 044-204-7869\)](tel:044-204-7857)

금융위원회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2024.02.28.
~03.04.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절차 개선 및 신고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해 그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 운영과정에서 발견된 보완 필요사항을 개선하기 위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변경신고 시 변경신고서 등의 제출기한 변경 (안 제10조의11)

-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신고서 및 증명서류를 신고한 사항이 변경되는 날의 30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하되, 심사 필요성이 낮은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변경되는 날부터 7일 이내, 변경사항 증명서류의 준비에 시간이 걸리는 경우는 3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함

②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 관련 의무 (안 제10조의12)

- 금융회사등이 가상자산사업자에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시, 인력 확보 및 물적시설 등을 갖추 것을 규정하는 조항 신설

③ 직권말소 사유 추가 (안 제10조의13)

- 「가상자산 이용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정지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영업과 관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받은 경우 등을 직권말소 사유로 추가

※ 문의처 :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검사와 \(전화: 02-736-1741, 팩스: 02-736-1756\)](tel:02-736-1741)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일부개정고시안2024.02.29.
~04.1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제20137호, 2024.1.23. 공포)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하위규정에 반영하고자 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거래계획 보고의무가 면제되는 임원·주요주주 (안 제200조의3제1항)

- 미공개중요정보 이용가능성 등이 낮은 임원·주요주주에 대해서는 사전공시의무 면제

② 거래계획 보고 제외 거래 (안 제200조의3제2항)

- 상속·주식배당 등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거래에 대해서는 사전공시의무 대상에서 제외

③ 보고내용 (안 제200조의3제3항)

- 「거래계획보고서」에 기재되어야 하는 보고자, 거래대상, 거래목적 등 규정

④ 보고기한(안 제200조의3제4항)

- 상위법에서 위임한 범위 내에서 보고기한을 규정

⑤ 보고면제 거래규모(안 제200조의3제5항)

- 사전공시의무가 면제되는 소규모 거래를 구체화

⑥ 변경거래 허용범위(안 제200조의3제6항)

- 상위법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 거래계획과 달리 거래할 수 있는 범위를 규정

⑦ 철회사유(안 제200조의3제7항)

- 거래계획 보고 후 철회가 가능한 사유(사망, 파산 등)를 규정

⑧ 과징금 부과 관련(안 제379조제6항 및 제7항)

- 상위법의 위임에 따라 과징금 부과대상 및 산정기준 등을 구체화

※ 문의처 :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http://www.fairtrade.go.kr) (전화: 02-2100-2691, 팩스: 02-2100-2678)

3. 법률 발의(제출)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의원 등 10인)	2024-02-28 발의
---------	---------------------------	---------------

현행법은 특별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을 두어 국내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의 일정 비율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주 52시간 근무제가 일반화되면서 근로자의 건강관리 및 여가생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체육시설 이용이 증가하고 있음. 근로자의 건강관리 및 증진은 복지후생과 생산성 향상에 필수적인 요소이나,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것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이 없는 상황임. 추가로 체육시설 이용을 통해 근로자의 건강이 증진되면 건강보험료 지출이 줄어드는 등 국가의 공공지출이 줄어들므로 세액공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음

이에 특별세액공제의 대상에 근로자 본인을 위해 지출한 체육시설 이용료를 추가하여 체육시설 이용에 소용되는 비용의 15%를 연간 공제금액 총 200만원을 한도로 세액공제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서민과 중산층의 세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안 제59조의4제4항 신설)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의원 등 10인)	2024-02-26 발의
-------------------	------------------------------	---------------

현행법은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로 하여금 특정한 결제방식을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등 앱 마켓사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시장경제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금지행위의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OS(운영체제) 사업자가 앱 마켓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자신의 앱 마켓을 거치지 않고 제3자 앱 마켓을 통해 앱을 설치하고 파일 또는 모바일 콘텐츠 등을 사용하는 이른바 “사이드로딩”과 관련하여서는 앱 마켓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제한·금지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행위를 규제하는 법 규정이 미비한 상황임

이에 OS(운영체제)를 공급하는 앱 마켓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앱 마켓사업자를 통해 스마트폰, 태블릿 PC에 앱의 설치·이용을 막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앱 마켓 생태계 전반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려는 것임 (안 제50조제1항제12호 신설)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의원 등 10인)

2024-02-28 발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말기유통법”이라 함)은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구매 지원금의 차별을 규제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사업자 간 가입자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금 경쟁이 저해되고 유통망의 지원금 상한제로 이용자의 저렴한 단말기 구입 기회가 제한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사업자 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을 보장하여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의 후생을 증진하기 위해 단말기유통법을 폐지하고, 단말기유통법상 존속 필요성이 있는 규정을 현행법에 신설함으로써 이동통신서비스 관련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안 제2조제18호부터 제29호까지, 제32조의11부터 제32조의18까지, 제51조의3 및 제52조의3 신설 등)

행정안전위원회

인천 글로벌경제거점도시 구성에 관한 특별법안(김교홍의원 등 10인)

2024-02-23 발의

하늘과 땅, 바다가 연결되어 있는 인천광역시를 국제적 경쟁력을 가진 글로벌경제거점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항공 여객·물류, 항공MRO 등 공항경제권신산업, 바이오·수소에너지 등 첨단산업 및 문화·관광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국제물류특구를 지정해 관세 등의 면제와 각종 자금을 지원하고, 인천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해 외국투자기관에 대한 특례와 입주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통해 첨단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자 함

문화산업진흥지구를 지정해 문화산업 관련 기업 및 대학, 연구소 유치 및 연구개발·인력양성·공동제작 등 문화산업을 집적화하고, 국제기구, 외국인투자기업, 국제학교, 국제여객터미널 등 글로벌경제거점도시 육성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 내용으로는

- ① 인천광역시를 항공 여객·물류, 항공MRO 등 공항경제권신산업, 바이오·수소에너지 등 첨단산업 및 문화·관광 분야에서 국제적 경쟁력을 가진 글로벌경제거점도시로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반조성 및 특례 등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안 제1조)
- ② 인천광역시의 글로벌경제거점도시 실현을 위한 국가와 인천광역시 각각의 책무와 함께 협력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 (안 제4조 및 제5조)
- ③ 글로벌경제거점도시 조성을 위한 추진체계를 마련함 (안 제2장)

- 인천광역시 글로벌경제거점도시의 구성과 경쟁력 강화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글로벌경제거점도시 조성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위원회를 두고, 이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국무조정실 실무추진단과 인천광역시 실무추진단을 둠 (안 제7조 및 제8조)
- 인천광역시장은 글로벌경제거점도시의 구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조성 및 경쟁력강화가 필요한 사항을 종합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되, 중앙정부와의 협력 등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안 제10조)
- 5년 단위의 종합계획을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해나가기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인천광역시장이 수립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안 제11조)

④ 글로벌경제거점도시 조성을 위해 공항·항만 경쟁력 강화, 첨단산업 생태계 조성, 국제회의 및 문화·관광 거점 조성을 위한 분야별 시책을 규정함 (안 제3장, 제13조, 제15조, 제20조 및 제26조)

- 국토교통부장관과 인천광역시장으로 하여금 공항경제권 조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지원 등을 규정함 (안 제13조 및 제14조)
-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천광역시가 복합물류 거점으로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제물류특구를 지정하고, 국제물류특구에 대해서는 경제자유구역, 자유무역지역으로 보고, 해당 특구에 대한 관세 등의 면제나 각종 자금지원 등을 규정함 (안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 인천광역시장은 인천광역시에 첨단산업 등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의 관할 지역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천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고, 외국투자기관에 대한 특례, 입주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등의 사항을 규정함 (안 제21조부터 제28조까지)
- 국제회의산업 육성을 위해 국제회의 등 방문 비자 특례 및 관련 사업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문화산업 진흥을 위해 인천광역시장이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해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 지원 등을 규정함 (안 제29조부터 제37조까지)

⑤ 글로벌경제거점도시 활성화를 위하여 글로벌 교육환경,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규정함 (안 제4장, 제38조, 제44조)

- 글로벌교육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자율학교 및 유아교육, 외국교육기관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특례 사항을 포함함 (안 제39조부터 제43조까지)
- 외국인의 편의증진을 위한 출입국관리의 특례, 외국인자녀어린이집, 외국인서비스 확대, 여행객에 대한 관세 면제 등 글로벌 생활환경조성에 필요한 각종 지원사항을 규정함 (안 제45조부터 제50조까지)

⑥ 글로벌경제거점도시 개발사업의 특례 및 이 법률상 지정된 각종 특구 등에 이전하거나 입주하는 기업 등에 대한 각종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 (제5장)

⑦ 글로벌경제거점도시 조성 등에 필요한 재정보호를 위해 재정지원의 근거와 인천광역시 특별회계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 (제6장)

행정안전위원회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의원 등 10인)

2024-02-26 발의

현행법에 따라 시·도지사는 관할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의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한 조정교부금을 확보해야 하며, 이중 해당 기초자치단체의 특정한 재정수요를 충족하는 특별조정교부금을 정해진 기준에 따라 배분하고 있음

한편,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된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분야의 경우에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해 조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특화단지 운영에 필요한 산업기반시설 및 공동연구개발 인프라에 들어가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산업기반시설 및 공동연구개발 인프라에 특별조정교부금을 배분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배분 기준에 따라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29조의3제2항 신설)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의원 등 10인)

2024-02-28 발의

현행법은 국가첨단전략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보호·지원함으로써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이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법 규정에 따라 국가안보와 경제안보에 미치는 영향 및 수출·고용 등 국민경제적 효과가 크고 연관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현저한 기술을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분야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전세계적으로 기후변화와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수소 및 모빌리티 분야의 기술개발이 활발한 상황이며, 이를 포함한 반도체·이차전지 등을 첨단전략기술로 지정하여 육성하고 있음. 대한민국이 미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에서 국가 차원의 확고한 성장전략을 세우고 실천해야 함

이에 국가첨단전략기술로 고시되어 있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분야와 함께 수소, 모빌리티 분야를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국가첨단전략기술로 법에 명시함으로써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쟁력 강화 및 보호를 가능하게 하고, 해당 기술 및 산업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안 제11조제1항)

4. 본회의 통과 주요 법안 (2024.02.29.)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413회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2024.02.29.) 심의안건 요지

정무위원회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

-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청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부정이익의 환수 체계를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다른 법률에 부정이익의 환수 규정은 있으나 이자 환수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이자를 가산하여 환수 하도록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기획재정위원회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을 현행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상향함

기획재정위원회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통계작성기관의 장에 대하여 통계종사자 처우 개선 노력 의무와 통계오류에 대한 수정 및 공표 의무를 신설함
- 통계법에 따라 수집되는 개인정보에 대하여 수집·이용, 통지, 열람 등에 관한 특례를 마련함

기획재정위원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경쟁입찰에서 복수의 낙찰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자진신고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감면 받은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도 감면함

기획재정위원회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

- 조달청장이 불공정 조달행위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업체의 수출입 거래자료 또는 전자세금 계산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부도, 파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비축물자 이용업체가 비축물자를 타인에게 재판매할 수 있도록 함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장애인·고령자 등의 접근성을 보장하는 ‘유·무선 정보통신’의 범위에 무인정보단말기 및 전자출판물을 포함함
- 무인정보단말기의 설치·운영자가 장애인·고령자의 이용 편의 증진 조치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행정안전위원회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 풍수해, 지반붕괴 등 재해에 대비가 필요한 방재지구를 풍수해보험 가입 촉진 대상에 추가함

행정안전위원회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부정하게 사용할 목적으로 운전면허증·자격증을 대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함
-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의무화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운동경기 입장권, 관람권 등의 부정판매를 금지함. ◦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체육회 및 지방장애인체육회에 국유·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사용·수익하거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체육계 인권침해나 스포츠 비리를 축소·은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함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방법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
- 교육공무원등의 벤처·창업기업 휴직을 총 7년 이내에서 자유롭게 허용함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분쟁 조정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현재 분산되어 운영되고 있는 건강피해조사, 환경분쟁 조정, 구제급여 지급 제도 등을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소관 사무로 규정하여 위원회가 제도를 통합·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환경피해 구제급여 지급 결정과 이에 대한 불복 신청을 심의하는 3개 상설 분과위원회를 각각 분리하여 운영하는 등 재심사의 공정성을 제고함
- 중앙위원회 위원 정수를 70명에서 100명으로 확대하고, 환경부 환경보건국장 등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하는 등 환경분쟁 조정 및 피해구제 업무의 책임성 및 효율성을 강화함

환경노동위원회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 승인을 받지 아니한 기존살생물물질이 함유된 살생물제품·살생물처리제품에 대하여 6개월의 판매 경과조치를 신설함
- 살생물제품피해 구제급여 관련 업무를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로 이관함

환경노동위원회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환경오염피해구제정책위원회를 폐지하고 환경책임보험 관련 업무를 환경보건위원회로 이관함
- 환경오염피해구제심의회, 구제급여심사위원회를 폐지함
- 환경오염피해구제급여 지급 결정 등의 업무를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로 이관함

국토교통위원회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공기관, 민간투자자 등이 투자선도지구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개발사업구역 안팎의 전기시설 설치시 비용부담 주체를 명확히 함

국토교통위원회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

- 소음대책지역 또는 소음대책인근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주민지원사업으로 설치된 시설을 주민단체에 무상으로 사용허가하거나 대부할 수 있도록 함

국토교통위원회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

- 레벨 4 이상의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하여 성능인증제와 적합성 승인제를 도입함

국토교통위원회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

- 공공주차장 내에서의 야영·취사 행위 등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함

국토교통위원회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거주 의무 개시시점을 현행의 ‘최초 입주가능일’에서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3년 이내’로 완화함
- 이 법 시행 전에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의 경우에는 거주 의무의 대상이 되는 해당 주택에 거주한 기간이 연속적이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를 거주 의무를 이행한 기간에 산입하도록 함

국토교통위원회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위반 동기 및 범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최대 감경 비율을 현행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75로 상향함

여성가족위원회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기본계획에 ‘지원의 확대 및 자원조달 방안’과 ‘교육 및 홍보’를 추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연령의 특성에 맞는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III. 국회 주요 의사일정(안)

※ 예정된 회의 일정 없음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구분	일시	내용	주최	장소
토론회 및 세미나	3/7(목) 10:00	윤석열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한 평가와 그 이후 과제 - 임금체불·노동시간 등 개별적 노동정책 관련 평가 및 이후 과제	용혜인 의원실 등	의원회관 8간담회실
자료집 등	3/6(수)	「금주의 서평」 제668호(2024-9호) 발간 - 도서명: 전세지옥 - 저자: 최지수	국회도서관	
	3/6(수)	「World&Law」 제2024-5호 발간 - 육아기 단축근무, 눈치 안보고 쓰려면?		
	3/7(목)	「현안, 외국에선?」 제77호(2024-5호) 발간 - JAXA, 일본의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		
	3/5(화) 14:00	2024년 미국 대선의 주요 이슈 및 전망 간담회 개최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처 제2세미나실
	3/4(월)	「Futures Brief」 제24-02호 발간 - 22대 국회에 제안하는 7대 혁신성장 아젠더	국회미래연구원	

※ 위 토론회 및 세미나 관련 자료들은 추후 제공 예정

[별첨] 지난 호 세종Law Focus(제224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일시	내용	주최	장소
토론회 및 세미나	2/26(월) 14:00	행정데이터 활용의 현 주소와 발전방안	양정숙 의원실 등	의원회관 9간담회실
	2/28(수) 14:00	기업상속세 개혁, 강원도에서 시작하자!	강원연구원, 유상범 의원실	의원회관 9간담회실
	2/28(수) 14:00	지속가능한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토론회	최연숙 의원실	의원회관 3세미나실
	2/29(목) 13:00	제6회 한국희귀질환 포럼 - 희귀질환 치료제 개발과 신치료제 접근성	서정숙 의원실	의원회관 3세미나실
자료집 등	2/26(월)	「현안, 외국예선?」 제76호(2024-4호) 발간 - 대만 민진당 재집권과 동아시아 정세 변동	국회도서관	
	2/27(화)	「최신외국입법정보」 제239호(2024-1호) 발간 - 일본의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입법례		
	2/28(수)	「금주의 서평」 제667호(2024-8호) 발간 - 도서명 : AI 윤리에 대한 모든 것 - 저자 : 마크 코켈버그		
	2/28(수)	「국회예산정책처 20년」 발간	국회예산정책처	
	2/26(월)	「이슈와논점」 제2201호 발간 - 「공정거래 관련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의 보완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2/26(월)	「NARS 브리프」 제33호 발간 - 교육의 기회균등 관점에서 본 디지털 기반 교육의 두 얼굴		
	2/27(화)	「이슈와논점」 제2202호 발간 - 23년간 변동 없는 예금자보호한도, 차등 상향 필요		
	2/28(수)	「이슈와논점」 제2203호 발간 - 신규임용 공무원의 퇴직 증가 문제 : 보수 현실화, 유연한 공직문화 조성 등 범정부 차원의 대응 필요		
	2/29(목)	「이슈와논점」 제2204호 발간 - 간병비 지옥은 해결될 수 있는가		
	2/29(목)	「이슈와논점」 제2205호 발간 -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지역활성화투자펀드로 출자		
	2/26(월)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88호 발간 - 2023년 한국인의 행복조사의 주요 결과 및 최근 4년간 동향	국회미래연구원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02.26~03.03)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시	분야	내용
2/26(월)	공정거래	2024년 공정위 주요업무 추진계획 관련 시사점
2/27(화)	해외규제	미국 국무부·재무부·상무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2주기 및 알렉세이 나발니 사망에 대응한 대규모 신규 경제제재 및 수출통제 조치 발표
2/27(화)	조세	2024년 지방세관계법령 개정
2/27(화)	기업인수/합병	우려스러운 IRA, FEOC 규정 및 미국 대선 RISK에 대응해야 하는 한국 자동차와 배터리 합작회사들
2/27(화)	공정거래	지배력 상실을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계열 제외 판단을 받은 사례
2/28(수)	건설/부동산	안전관리계획의 일부 누락을 이유로 부과된 건설기술진흥법상 벌점부과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부실공사 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제1심에서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2/28(수)	ESG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준비 - 2.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1차 발표
2/29(목)	노동	직장 내 성희롱 사건 조사 시 유의 사항 : 성인지 감수성 원칙,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2/29(목)	노동	월간 노동 뉴스레터

입법전략자문그룹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그룹(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Group)은 기존 명망가, 고위관료 출신의 인재와 함께 국회 및 정부부처 출신의 실무 전문인력들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관 및 규제대응업무 전문팀입니다. 다양한 네트워크와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요구에 맞춤형 Total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분야에 대해 “법률 제·개정 사항과 동향 파악, 정부정책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Legal 분석” 등이 필요하신 경우에도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문서의 내용(인쇄본 또는 전자문서) 및 이를 이용하여 편집한 내용은 제3자에게 공유하실 수 없으며,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유) 세종과 미리 상의하여 동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백대용 | 변호사

[프로필보기](#)



장대섭 | 고문

[프로필보기](#)



김광재 | 변호사

[프로필보기](#)



김성범 | 변호사

[프로필보기](#)



안현정 | 변호사

[프로필보기](#)



방세희 | 변호사

[프로필보기](#)



성재열 | 변호사

[프로필보기](#)



조성환 | 변호사

[프로필보기](#)

SHIN & KIM

법무법인(유) 세종